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76호 2019. 11. 1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0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8호 주택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변경) 고시 ----- 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91호 인천광역시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04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1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9-2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0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6-6호(2016.1.1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 (도로: 소로2-101호선, 사업명: 검단일반산업단지 연결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변경사유

- 토지 등록전환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및 용지조서 변경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3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01호선)
- 명칭: 검단일반산업단지 연결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당초	도로	소로	2	101	8	8	192.9	-	192.9	-	1,512
변경	도로	소로	2	101	8	8	192.9	-	192.9	-	1,553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17. 3. 20. ~ 2020.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용지조서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기정	395-203	대	21	21	임홍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 39번길 8-28(상동)	부천농업협동조합	신상동지점	근저당권	
	변경	395-203	대	21	21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2	변경없음	395-215	도	375	375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3	기정	395-214	대	15	15	고경중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300, 105동 301호(대림아파트)				
	변경	395-214	대	15	15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4	기정	395-216	대	8	8	강전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09 대명아파트 101-1105				
						형창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92-1 한라아파트 106-2003	(주)신한은행	일산테크지점	근저당권	
						김순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로 67	서인천농업협동조합	검암지점	근저당권	
						김창일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 506번길38,101-401(검암동,천우하이빌)	농협은행주식회사 외 1	북인천지점	근저당권	
	변경	395-216	대	8	8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5	기정	395-151	도	7	7	형창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92-1 한라아파트 106-2003	(주)신한은행	일산테크지점	근저당권	
	변경	395-151	도	7	7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6	기정	395-213	대	41	41	형창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92-1 한라아파트 106-2003	(주)신한은행	일산테크지점	근저당권	
	변경	395-213	대	41	41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7	기정	395-212	대	23	23	류광순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9나길8,101-611(문래두산위브)	검단농업협동조합	오왕지점	근저당권	
	변경	395-212	대	23	23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8	기정	395-205	답	65	65	김옥순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50	서인천농업협동조합	건지지점	근저당권	
	변경	395-205	답	65	65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9	기정	395-202	답	581	581	국	기획재정부				
	변경	395-202	답	581	581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10	기정	395-208	대	8	8	김문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59				
	변경	395-208	대	8	8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11	기정	395-206	대	1	1	김병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17번길 45(오류동)	(주)신한은행	검단산단금융센터	근저당권	
	변경	395-206	대	1	1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12	변경없음	395-207	도	75	75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13	기정	369-14	대	1	1	장명식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38번길 26,301호(우림빌라)	(주)우리은행	검단산단지점	근저당권	
	변경	369-14	대	1	1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14	기정	369-15	대	4	4	장명식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38번길 26,301호(우림빌라)	(주)우리은행	검단산단지점	근저당권	
	변경	369-15	대	4	4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15	기정	369-12	도	93	93	장명식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38번길 26,301호(우림빌라)	(주)우리은행	검단산단지점	근저당권	
	변경	369-12	도	93	93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16	기정	산213-2	도	114	114	국	국토교통부				
	변경	369-18	도	130	130	국	국토교통부				
		369-20	도	25	25	국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7	변경없음	산182-10	임	32	32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18	변경없음	369-16	도	12	12	국	국토교통부				
19	기정	395-209	대	2	2	오정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83				
	변경	395-209	대	2	2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20	기정	395-204	대	15	15	이준희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26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변경	395-204	대	15	15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21	기정	395-211	종	4	4	금호중앙교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89				
	변경	395-211	종	4	4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22	기정	395-210	전	5	5	이권형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17번길 35				
	변경	395-210	전	5	5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23	기정	395-217	임	6	6	이종혁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검단아이파크아파트 103-602				
	변경	395-217	임	6	6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십곡동)				
24	변경없음	395-218	도	4	4	국	국토교통부				
계	기정			1,512㎡							
	변경			1,553㎡							

지장물조서(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변경	395-212	화장실	블록 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5.1㎡	류광순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9나길8, 101-611(문래두산위브)	
			간판	3.5×1.5, 철판기둥 2.5m	1식			
2	변경	395-211	웬스	H=1.5m	9m	금호중앙교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89	
3	변경	395-202	창고	샌드위치 판넬 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35.30㎡	최점홍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와북로 228-5	
4	변경	395-202	창고	블럭 조 함석 지붕	12.48㎡	김문원	인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43(오류동)	
			수목	향나무(수령 30년)	4주			
5	변경	395-202	창고	블럭 조 슬레이트 지붕	9.24㎡	인천광역시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수목	앵두, 수령 7년	1주			
			수목	사철, 수령 7년	1주			
			수목	장미, 수령 7년	1주			
			수목	관상수, 수령 7년	1주			
			담장	세멘블록, H=1.7m	8.5m			
6	변경	395-208	대문	적벽돌문주, 3.2 X 2.0, 슬래브지붕	1식	김문원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43(오류동)	
			수목	꽃나무, 수령 7년, H:2m	1식			
			수목	향나무, 수령 30년, H:5m	1식			
			수목	무궁화나무, 수령 30년, H:3m	1식			
			수목	단풍나무, 수령 5년, H:3m	1식			
			수목	감나무, 수령 30년, H:8m	1식			
			수목	단풍나무, 수령 30년, H:8m	1식			
			수목	밥알꽃나무, 수령 7년, H:2m	1식			
			수목	라일락, 수령 30년, H:3m	1식			
			수목	사철나무, 수령 30년, H:3m	1식			
화단	조경석	2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련 번호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7	변경	395-207	수목	소나무	3주	김병찬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454(오류동)	
			수목	가시오가피	4주			
			수목	사철	1주			
			수목	무궁화나무	3주			
			수목	장미	1주			
			화단	조경석	10㎡			
			웬스	철제기둥, H:1.5m	1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8㎡			
8	변경	395-214	수목	메타세콰이어(수고 15m)	1식	고경중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00, 105동 301호(대림아파트)	
9	변경없음	395-213	한전주	8327E 622 안동지 78	1	한국전력		
10	변경없음	395-215	한전주	확인불가	1	한국전력		
11	변경없음	395-202	한전주	8327E 732 안동지 77	1	한국전력		
12	변경없음	395-202	한전주	8327E 733 안동지 77-B1	1	한국전력		
13	변경없음	395-207	한전주	8327E 741 안동지 77	1	한국전력		
14	변경없음	395-217	한전주	8327E 841 안동지 76	1	한국전력		
15	변경없음	산182-10	한전주	8327E 843 안동지 76-L1	1	한국전력		
16	변경없음	395-214	채신주	KT-입상1호	1	KT		
17	변경없음	395-213	채신주	확인불가	1	KT		
18	변경없음	395-202	채신주	확인불가	1	KT		
19	변경없음	395-207	채신주	확인불가	1	KT		
20	변경없음	395-217	채신주	오류20 1-2	1	KT		
21	변경없음	산182-10	채신주	오류20 L1	1	KT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208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업명칭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명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122번길 19, 3층(석남동)
- 대표자 : 조천휘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 면적 : 15,244.5m²

4. 정비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2019년 5월 7일

○ 준공예정일 : 2023년 10월

5. 대행개시결정일 : 2019년 10월 28일

6. 사업대행자

○ 사업대행자 : (주)한국토지신탁 대표 최윤성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7. 대행사항

- 1) 시공사 선정 및 변경,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 2) 설계자 선정 및 변경, 설계용역계약 체결 및 변경
- 3) 감리자 선정 및 변경, 감리용역계약 체결 및 변경
- 4) 사업시행계획 수립 또는 변경
- 5)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변경
- 6)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 업무 지원
- 7)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 수납·관리
- 8) 준공인가 신청
- 9) 이전고시
- 10) 재산관리
- 11) 일반분양분에 대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
- 12) 협력업체 선정 및 변경(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변경 포함)
- 13) 기타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

8. 기타사항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본문 제7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재

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또한, 사업대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20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2-2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2-2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대방건설(주) (대표자 구찬우)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2-2블록
 - 나. 대지면적 : 88,622㎡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43,660.1824㎡ (지하3층, 지상20층)
 - 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21개동 1,417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업비 : 616,258,815천원
4. 사업기간 : 2019. 11. 02. ~ 2022. 09. 01.
5. 변경사항
 - 가. 단위세대 변경(위치, 면적 등)

나. 주차구획 변경

다. 주민공동시설 변경(운동시설, 경로당, 도서관 등 배치)

라. 근린생활시설 변경

마. 입면 마감선 변경

바. 사업기간 변경

사. 누락 및 오기 사항 정정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21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비지니스로 181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11.1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11-1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23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 181 (청라동)	20101111	지구단위계획의 국제업무단지 지역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40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141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500 (오류동)	20111115	인천 서구 정서진의 지명을 이용하여 '정서진로'로 명명 함.	매립지 캠퍼장
4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59-8	인천광역시 서구 가평로419번길 3 (신현동)	20090922	가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244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77번길 30 (원창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43-18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287번길 20 (연희동)	20090922	송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20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181번길 4-12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호번호로 도로명부여	
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34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182번길 11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호번호로 도로명부여	
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82-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223번길 11 (청라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6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환내로174번길 23-20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호번호로 도로명부여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90-5	인천광역시 서구 편석로196번안길 12-9 (원창동)	20171025	편석로196번길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791 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관련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1.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서3구역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에 따른 토지대금 납부 방법과 매수자명의 변경 사항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

2. 주요내용

- 체비지 매각에 따른 토지대금 납부 방법과 연체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안 제31조)
- 매수자의 명의변경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분쟁의 소지 예방(안 제32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전화032-560-4753, FAX560-2774)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경서3구역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에 따른 토지대금 납부 방법과 매수자명의 변경 사항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

2. 주요내용

- 체비지 매각에 따른 토지대금 납부 방법과 연체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안 제31조)
- 매수자의 명의변경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분쟁의 소지 예방(안 제32조)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계약체결시”를 “계약체결 시”로, “구금고”를 “구 금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을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로, “별지 제10호서식”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토지대금은 <u>계약체결시</u>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40퍼센트 이상을 계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머지 잔금은 계약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u>구금고</u>에 납부하여야 한다. <u>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된 만료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재연기할 수 있다.</u></p> <p>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으나, 재연기 할 경우에는 미납금에 대하여 재연기한 날부터 <u>구금고 일반대출 연체금리에</u>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31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 <u>계약체결시</u> ----- ----- ----- ----- ----- ----- <u>구금고</u> ----- ----- . <u><단서 삭제></u></p> <p>② 제1항에 따른 대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32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u>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u></p>	<p>제32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① ----- ----- <u>명의변경을 하고자 할</u> ----- -----</p>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명의변경승인서를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

2. 매각토지로써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의 사유로 주무부기관장의 명의변경 동의를 있을 때

4.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③ (생략)

-----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등 매각규칙

- 제7조 (대금의 납부) ① 제6조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토지 대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대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11-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 18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1. 0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적극행정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간사, 수당 등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예산실(기획팀)

▷ 전 화 : 032)560-4046 [FAX 032)560-2703]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건 수 렴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 1804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공공기관 운영에 투명성 및 채용비리 관리체계 강화를 반영하는 등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청렴한 공직문화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자격기준 개정
(제6조, 별표1)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 설치 개정
(제8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11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인천광역시 서구청 노인복지과 (전화 560-4971, 팩스 560-274)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4. 기 타

- 의견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 의견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따르며, 제3조의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16조 중 “회계연도 종료”를 “회계연도가 끝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신규 채용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면된 자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원 자격기준(제6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센터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통지침)에 의한 부적격자는 미채용
부장 <1급>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7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과장 <2급>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5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대리 <3급>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3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주임 <4급>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단 3,4급 직원 중 회계담당자를 채용 할 때에는 회계관련 자격 및 경력을 추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조직체계 및 정원) 센터의 조직 체계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u>사전</u>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7조(조직체계 및 정원) ----- ----- ----- <u>미리</u> ----- -----</p>
<p>제8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u>따르며</u>, 제3조의 운영위원회가 이를 <u>대행한다</u>.</p>	<p>제8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따</u> <u>른다</u>.</p>
<p>제13조(물품의 관리) ① 센터장은 물품관리 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해 장부를 <u>비치하고</u> 전반사항을 관리한다. ② (생략)</p>	<p>제13조(물품의 관리) ① ----- ----- ----- <u>갖춰</u> <u>두고</u> ----- 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결산) 센터장은 <u>회계연도 종료</u>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6조(결산) ----- <u>회계연도가 끝</u> <u>난</u> ----- ----- ----- ----- ----- ----- -----</p>

